

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제2010-161호

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년 9월 1일

지식경제부장관

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관한 고시

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의 종류

1. 보험취급우편물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우편물)
2. 특별송달우편물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)
3. 착불배달우편물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우편물) 단, 수취인으로부터 착불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
4. 계약등기우편물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우편물)로서 회신우편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우편물) 및 본인지정배달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우편물)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

부칙

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